

강원도립대학교 GSU-MOOC 운영규정

(제정) 2019-07-29규정 제523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온라인 공개강좌(MOOC) 개발 및 운영을 위해 강원도립대학교 GSU-MOOC 운영(이하 ‘MOOC’라 한다)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운영 범위) 강원도립대학교 MOOC 운영은 자체재원 및 재정지원 사업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운영, 대학 교육프로그램의 활용,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추진하는 강좌개발 사업(K-MOOC) 참여 연계 등을 포함한다.

제3조(강좌개발 참여대상) 강원도립대학교 MOOC 개발 참여대상은 본교 교원으로 한다.

제4조(담당부서) ① 강원도립대학교 MOOC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수학습센터를 주관 부서로 한다.

② 교수학습센터는 강원도립대학교 MOOC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수요분석을 통한 참여교원 및 교과목 선정
2. 교수설계 및 교수전략 컨설팅 지원
3. 콘텐츠 제작 지원
4. 콘텐츠 자체평가위원회 구성
5. 대·내외 콘텐츠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
6. 콘텐츠 질관리 체계 구축
7. MOOC 사업 추진 및 운영 지원
8. 기타 MOOC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업

제5조(MOOC운영위원회) ① 강원도립대학교 MOOC 운영의 총괄 관리를 위하여 MOOC운영위원회(이하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교학처장, 기획홍보처장, 사무국장, 종합정보관장, 산학협력단장, 교수학습센터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,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2인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을 위원장으로 교수학습센터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하고,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운영위원회는 MOOC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정책 심의 및 의결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강원도립대학교 MOOC 운영 정책방향 설정
2. 학교의 비전, 교육목표,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대학 MOOC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
3. 운영 계획 및 운영비 집행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
4. MOOC 수강에 따른 학점인정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
5. 운영 성과관리,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
6. MOOC 사업 참여 및 활용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의결

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최된다.

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6조(콘텐츠 자체평가위원회) ① MOOC 운영의 체계성 확립 및 질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강좌에 대한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자체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

② 자체평가위원회는 강좌 내용전문가 1인(동일 전공), 웹접근성 및 저작권 전문가 1인 등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, 교수학습센터장이 위촉한다.

③ MOOC 사업 신청을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는 외부 위원으로만 구성한다.

④ 자체평가위원회의 임기는 위촉 시점부터 제5항의 역할이 완수되는 시점까지로 한다.

⑤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강좌의 구성(강좌내용, 교수설계 등) 평가
2. 강좌의 형식(웹접근성, 동영상, 저작권 등) 평가
3.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

부 칙(2019. 7. 29)

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